

국민권익위,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한 고강도 대책 주문

- 13, 14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지자체 감사관 회의' 연이어 개최 -



(공직 기강 확립 대책 발표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1. 7. 1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 14일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폭행, 군(軍) 내 성비위, LH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지역 일선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와 각급 기관들은 최근 공직 기강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패 유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 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공공기관(1,281개)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특히 채용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채용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추가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공직자 부패행위, 부당한 사익 추구 등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수뢰 등의 경우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계획이다.

또한,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처리 과정과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신고자 정보 누출과 같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한다.

더불어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평가제도 전반에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기존의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포함시켜 공직사회 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 농림, 산업 분야 등 주요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해 인사, 계약과정의 이해충돌여부 등 내부 경영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들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과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며,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지난 4월부터 국민권익위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청렴교육 활성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주요 반부패 정책들이 지방행정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추후 광역의회와 공직유관단체까지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금년부터 전면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고위직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는 한편,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200만 공직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등을 활용해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업무 문화를 일선 현장에 정착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일탈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 하다” 라며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급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 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해충돌 관련 항목 추가 반영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감점 적용 -

(2021. 7. 27., 국민권익위)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항목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도 새롭게 감점으로 반영한다.

이는 지난 4월에 수립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등의 일환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LH 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한다.

또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한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 기관이 적발한 부패사건 등이 많은 기관의 경우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로 감점하는 등 감점 반영 내용과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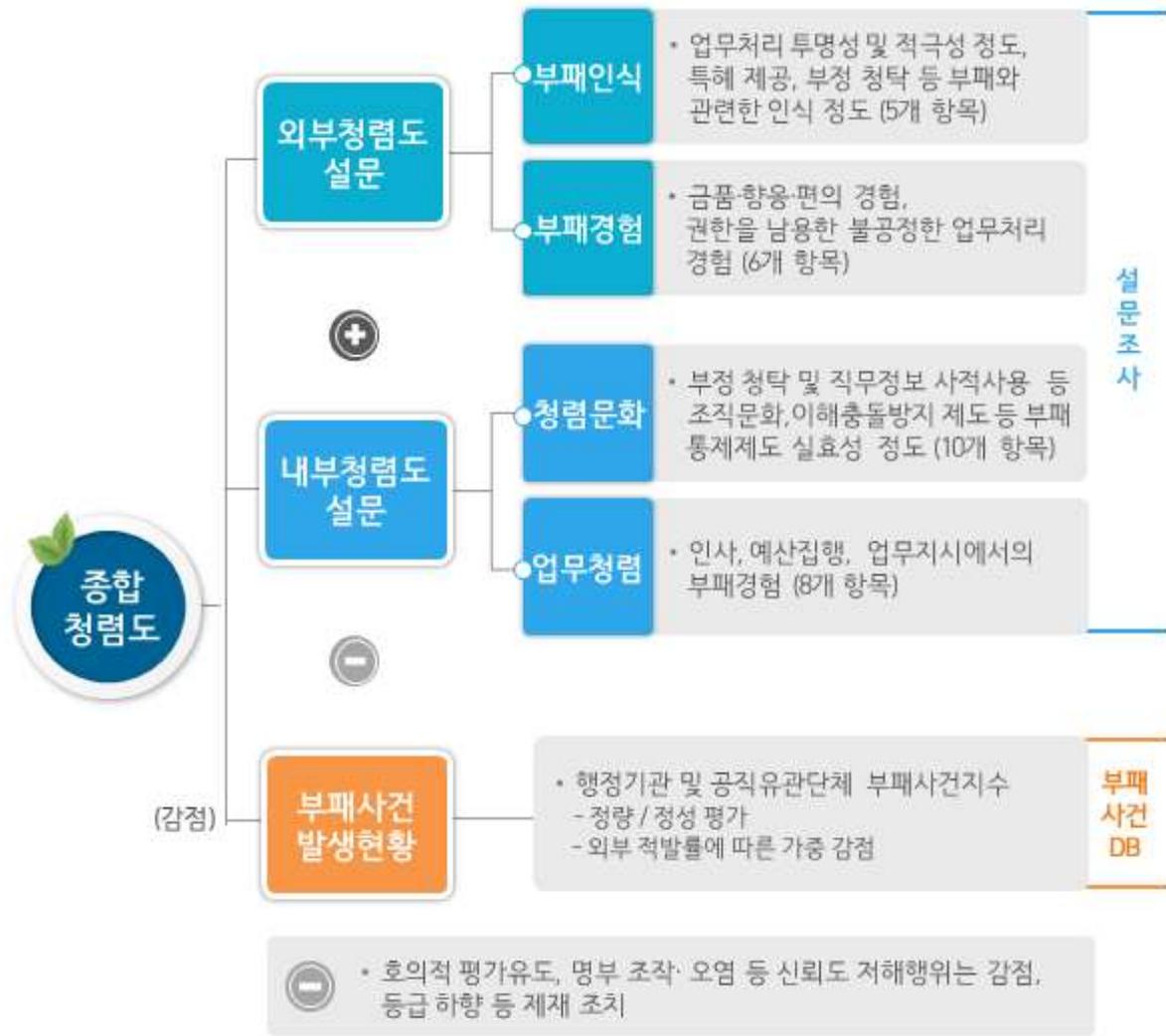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8개 공공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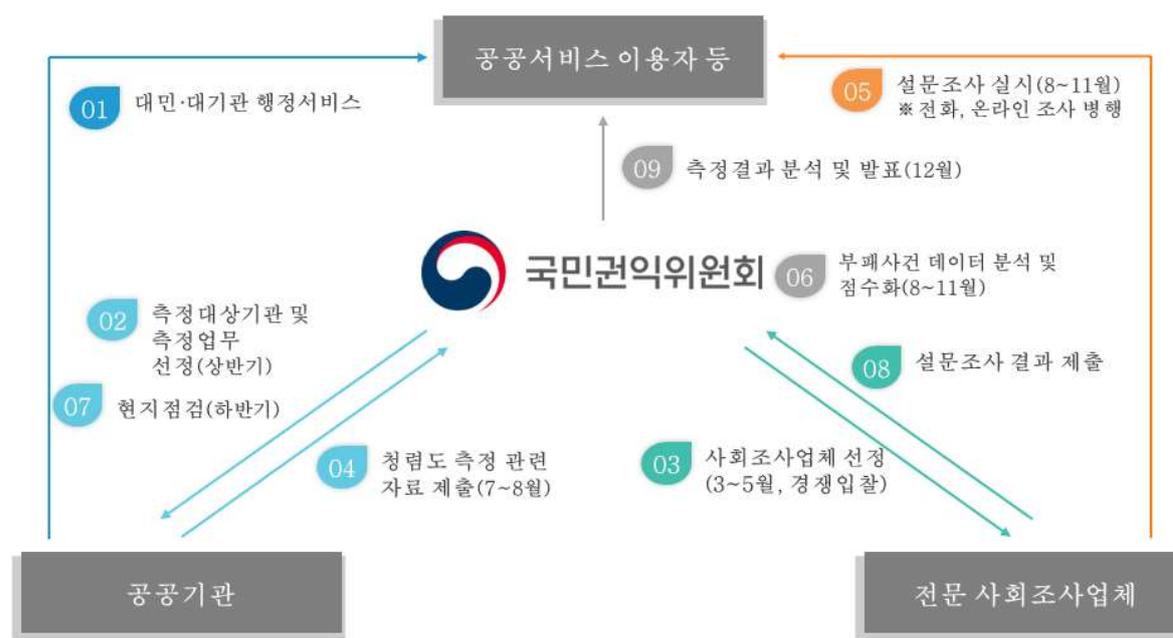
특히, 올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과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개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사건들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각급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를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측정모형안



운영체계 및 절차



국민권익위,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못한다

-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 1,224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2건 개선 권고 -

(2021. 7. 7., 국민권익위)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수의 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했다.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년에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999개 제·개정 법령 검토, 169개 법령, 3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가능해져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2021. 7. 21.,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20.)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 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절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 처리방향 제시(예시):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신청내용의 해결노력 필요 등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농업인의 자영업자 인정 관련 사례 >

국민 A는 중소기업 직원이고 남편은 포도 농사를 짓는 맞벌이 부부다. 이들은 둘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원인은 남편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민원 처리 사례)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 등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을 거절. 이때 공무원의 행위는 현행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는 아님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활용) 국민 A는 농지원부 및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의 자영업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 ⇒ 권익위는 국민 A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처에 적극행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
- ⇒ 소관부처는 국민 A의 신청을 적극행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A부부는 물론 사정이 유사한 부부가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림

< 산업단지 내 물품창고 건설허가 신청 사례 >

한 산업단지에서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납품 물량이 늘어나 물품창고 증축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 담당 공무원은 “공유지가 창고용지 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어 증축 불가”라고 답변

(일반민원 처리사례) 공유지를 업체의 물류창고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국민 B의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는 않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활용) 국민 B는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 ⇒ 권익위는 국민 B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관부처에 적극행정 여부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 ⇒ 소관부처는 국민 B의 신청이 적극행정 대상이라고 확정하여 공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 내에 물품창고 증축 가능

◇ 소극행정 재검토 신청제 도입 후에는 각 기관에서 아래 유사 사례들을 소극행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권익위가 의견을 제시하여 소극행정이 시정되도록 조치

• (적당편의) 물품 A의 부속품인 물품 B의 설계·제작시 물품 A와 그 규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사전에 실측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나, 해당 절차를 누락하고 제작을 진행하였음. 결국 제작된 부품이 서로 맞지 않아 추가 작업을 실시하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

• (업무해태) 공무원 A는 B업체의 부지매립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한 달 이내에 그 협의를 종결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A는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여, 결국 매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B업체는 ○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B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공무원 A는 B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소송건을 취하토록 요청

• (업무해태) 공무원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신청을 접수하고도, 기존 관행대로 작년에도 12월에 지급을 하였으니 올해도 그럴 거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 지급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초래

• (탁상행정) A업체와의 보수용역 계약 체결시 개정된 법령으로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노임 단가 등을 갱신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전임자의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후에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민원을 야기

• (관중심행정) 사유지 주출입구 앞 도로상에 당사자 통보 없이 ○○군에서 관광사업 목적으로 오두막정자를 설치. 집을 지으려고 하니 오두막정자로 인해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요청. 담당공무원은 철거 예산문제로 올해 초 철거를 약속하였으나 기관장 및 주민의 반대로 철거가 지연되어 불편 초래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

(2021. 7. 1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말했다.

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비위사실을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사실을 통보하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승진 부적격자가 승진을 하거나, 징계 시효가 경과 또는 비위행위자가 퇴직한 후 비위사실을 알게 돼 징계를 못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 (징계회피 후 승진) A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는데도 음주운전 6개월 후인 다음해 2019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임용('20.10월 감사원 감사결과)
- (징계시효 경과·퇴직) 공공기관 직원 24명은 음주운전사건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2019년 11월까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중 5명은 2019년 11월 현재 징계시효 경과 또는 퇴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됨('20.6월 감사원 감사결과)

또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동 지침 내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은 누락돼 이들 기관 직원들은 수사사실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 「범죄수사규칙」(경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직원의 수사사실 통보 대상 비위행위에 성범죄·음주운전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의2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수사사실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을 모두 명시하도록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이 제고돼, 공공부문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